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13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허성무·윤준병·박선원
이정현·권향엽·윤종오
김종민·김용만·서미화
송옥주·이훈기·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공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약정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예컨대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약정서만을 발급하거나, 국어번역문을 제공하더라도 차후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에 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탁기업이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약정서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한 약정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함께 발급한 외국어 약정서와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서의 사용 언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위탁기업이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약정서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한 약정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u> <u>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함께 발급한 외국어 약정서와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한다.</u>